

이 사 회 회 의 록 (2021-1차)

(2021. 1. 8. 11:00-12:00)

학 교 법 인 승 의 학 원

이영희	백정우	김보라	김영민
김명옥	이민우	김지민	

이 사 회 회 의 록 (2021-1차)

회의소집 통보일자 : 2020. 12.31	
이사정수 : 8인	재적이사 : 8인
감사정수 : 2인	재적감사 : 2인

1. 회의일시 : 2021. 1. 8(금) 11:00
2. 회의장소 : 법인회의실
3. 참석임원 : 이사(7인) 윤순희, 강순자, 원종학, 김명옥, 백정수, 윤인호, 김중곤
4. 불참임원 : 이사(1인) 김윤태

감사(2인) 김학선, 박동진

5. 회의안건 :

- 의안 제1호 : 2020학년도 법인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의안 제2호 : 2021학년도 법인회계 예산(안)
- 의안 제3호 : 2020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신청(안)
- 의안 제4호 : 수익사업(안)
- 의안 제5호 : 정관변경(안)
- 의안 제6호 : 각학교 교원 인사

6. 회의내용

- 윤순희 이사장이 재적이사 7명이 참석하였기에 성원이 되므로 개회를 선언하고, 김명옥 이사 기도에 이어 전회 회의록을 낭독하라고 하다.
- 홍삼기 총무과장이 2020-10차 이사회(2020.11.26) 회의록을 낭독하다.
- 원종학 이사가 전회 회의록을 그대로 받기로 하며 동의하자, 백정수 이사 제청에 이어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므로 전회 회의록은 그대로 받기로 하다.

尹 順 希	백 정 수	강 순 자	원 인 호
김 명 옥	김 학 선	박 동 진	

1. 의안 제1호 : 2020학년도 법인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윤순희 이사장이 의안 제1호 2020학년도 법인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의하다.
- 강석주 사무국장이 법인회계 2020학년도 추가경정예산이 토지매각대 증가와 기부금 감소 등 수입 증·감액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을 추가 경정하여야 함을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하다.
- 원종학 이사가 법인 추가경정예산을 사전 검토하였는데 토지매각대 증가와 기부금 감소 등을 감안하여 재정회계운영 지침에 맞추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윤인호 이사 동의와 김명옥 이사 재청에 이어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다.
- 윤순희 이사장이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2020학년도 법인회계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219,929,000원에서 수입·지출 공히 4,405,055,000원이 증가된 4,624,984,000원으로 가결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

2. 의안 제2호 : 2021학년도 법인회계 예산(안)

- 윤순희 이사장이 의안 제2호 2021학년도 법인회계 예산(안)을 부의하다.
- 강석주 사무국장이 2021학년도 법인회계 예산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과 특례 규칙에 의거 법인 실정과 운영 목표에 맞추어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증·감 내역과 예산의 세부사항을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하다.
- 백정수 이사가 예산 세부사항을 검토한 바,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연천 소재 토지 매각 상황을 고려하여 토지매각대가 감소하였고, 예금금리 하향으로 예금 이자 수입이 감소하는 등 재정회계운영 지침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처리하는 좋겠다고 하자 김종곤 이사 동의와 강순자 이사 재청에 이어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다.
- 윤순희 이사장이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2021학년도 법인회계 예산은 수입·지출 공히 2,509,675,000원으로 가결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

尹順熙	백정수	강석주	윤인호
김명옥	원종학	김종곤	

3. 의안 제3호 : 2020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신청(안)

- 윤순희 이사장이 의안 제3호 2020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신청(안)을 부의하다.
- 강석주 사무국장이 교육부에서 사립대학정체과-17204호(2020-12-11) 「2020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관련 신청 안내」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47조에 의거하여 사립대학의 학교법인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에 교육부에 2020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중 학교법인이 부담할 최소액 이상을 승인 신청하여야 함을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하다.
- 원종학 이사가 현재 우리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성이 저수익성으로, 우리 법인의 운영 수입등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승의여자대학교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전액 부담하기는 어렵다고 하다.
- 김명옥 이사가 현재 우리 법인의 재정여건상 승의여자대학교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전액 부담하기는 현실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 법인의 재정여건 개선에 노력하기로 하고, 교육부에 원안대로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김종곤 이사 동의와 백정수 이사 재청에 이어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다.
- 윤순희 이사장이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2020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신청을 다음과 같이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가결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

■ 결의사항

- 1) 2020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 부담 승인 신청금액 : 465,062,000원
- 2) 2020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법인 부담 승인 신청금액 : 4,152,000원
- 3) 재정여건 개선계획 : 법인 재정여건 개선을 위하여 저수익 수익용재산 토지 처분후 정기예금 예치로 예금이자 수입 증가, 수익용 임대부동산 (건물) 취득 후 임대수입 증가 등 재정여건 개선위하여 노력한다.

윤순희	백정수	김종곤	김명옥
김명옥	원종학	김명옥	

4. 의안 제4호 : 수익사업(안)

- 윤순희 이사장이 의안 제4호 수익사업(안)을 부의하다.
- 강석주 사무국장이 「사립학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우리법인의 수익사업 신설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하다.
- 김명옥 이사가 현재 우리학원은 법인 수익사업이 없으며, 법인 운영 재원의 대부분을 수익용기본재산 예금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예금금리 하향으로 수입이 감소하는 추세로 법인 재정여건 개선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
- 백정수 이사가 수익사업은 우리학원 법인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며, 수익사업 자본금이 수익용기본재산 예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안정적인 투자와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이 적절하다고 하며, 「학교법인 승의학원 수익사업계획서」 원안대로 수익사업을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강순자 이사 동의와 원종학 이사 재청에 이어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다.
- 윤순희 이사장이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법인 수익사업은 [별첨1] 학교법인 승의학원 수익사업계획서와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가결 통과 되었음을 선포하다.

5. 의안 제5호 : 정관변경(안)

- 윤순희 이사장이 의안 제5호 정관 변경(안)을 부의하다.
- 강석주 사무국장이 승의학원 정관 변경(안) 내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하다.
- 원종학 이사가 의안 제4호 수익사업 신설에 대하여 가결 통과되었으므로 승의학원 수익사업이 포함된 내용으로 승의학원 정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윤인호 이사 동의와 김명옥 이사 재청에 이어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다.

윤순희	백정수	강석주	원종학
김명옥	이인호	김희진	

- 윤순희 이사장이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법인 정관 변경은 [별첨2] 정관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가결 통과 되었음을 선포하다.

6. 의안 제6호 : 각학교 교원 인사

- 윤순희 이사장이 의안 제6호 각학교 교원 인사를 부의하다.
- 강석주 사무국장이 중학교의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추천, 대학교의 면직, 재임용탈락 등 각학교 교원 인사사항을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하다.
- 윤인호 이사가 중학교의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중 1순위 교사 김경미는 올바른 교육정신으로 사제동행을 실천하며, 근면 성실하여 타 교사의 모범이 되었기에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로 추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며, 대학교 교원 인사는 업적평가와 교원 인사위원회를 거쳐 총장이 제청한 사항이므로 각학교 교원 인사는 원안대로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백정수 이사 동의와 김종곤 이사 제청에 이어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다.
- 윤순희 이사장이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승의여자중학교 교사 김경미는 교감 자격연수대상자로 추천하여 자격 취득후 2021. 9. 1부 교감으로 임용하고, 승의여자대학교 조교수(산학협력) 박미환은 2020. 12.31부 의원면직, 조교수(강의전담) 한서연은 2021. 2. 28부 재임용탈락 하는 것으로 가결 통과되었음을 선포하고, 이사회의를 끝마치다. (폐회 12:00)

2020. 1. 9.

윤순희	백정수	김종곤	김영희
김백옥	김민준	김민준	

학교법인 숭의학원 이 사 장 윤 순 희

尹順희

이 사 백 정 수

백정수

이 사 강 순 자

강순자

이 사 원 중

원중

이 사 김 명

김명

이 사 윤 인

윤인

이 사 김 중

김중

尹順희	백정수	강순자	원중
김명	윤인	김중	

< 별첨 1 >

학교법인 송의학원 수익사업계획서

1. 수익사업 개요

- 1) 사업의 명칭 : 학교법인 송의학원 사업소
- 2) 사업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2길 10
- 3) 사업의 종류 : 부동산 임대업

2. 사업경영에 관한 자본금 확보방안

- 1) 자본금 : 12,000,000,000원
- 2) 자본금 확보 방안
 - ① 수익용기본재산 예금 : 12,000,000,000원

3. 사업경영의 대표자

- 1) 대표자 성명 : 윤순희 (학교법인 송의학원 이사장)
- 2) 대표자 주소 :

4. 사업의 시기 및 기간

- 1) 사업의 시기 : 2021년
- 2) 사업의 기간 : 2021년 ~ 사업종료시 까지

尹 順 熙	윤 순 희	김 영 희	김 영 희
김 영 희	김 영 희	김 영 희	김 영 희

5. 3년간 사업예산서

(단위: 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수입	수익재산수입 (임대수입)	300,000,000	300,000,000	315,000,000	
	이월금	0	30,000,000	30,000,000	
	소계	300,000,000	330,000,000	345,000,000	
지출	관리운영비 (재산세)	25,000,000	26,000,000	27,000,000	
	법인회계 전출금	245,000,000	274,000,000	288,000,000	
	소계	270,000,000	300,000,000	315,000,000	
당기운영순수입		30,000,000	30,000,000	30,000,000	

6. 수익사업 효과

- 1) 수익사업 수입이 기존 정기예금 예금이자 수입(약 연 1% 금리) 대비 250%~300% 증가된 연2.5% ~ 3.0% 임대료 수입이 예상됨
- 2) 수익사업 이익에 대해서는 관련 회계규칙 및 규정에 따라 집행될 예정이며, 학교경영에 재정적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음

7. 기타 검토사항

- 1) 수익사업으로 인한 학교교육의 지장여부 : 이상없음
- 2) 수익사업으로 인한 민원 발생여부 : 이상없음

8. 관련 법령

- 1) 사립학교법 제6조(사업)

2020.12.31.

학 교 법 인 승 의 학 원

김명숙	백재우	김문리	김영준
김명숙	김영준	김영준	

< 별첨 2 >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학교법인 송의학원

현 행	변 경(안)
<신설>	<p>제 9 장 수 익 사 업</p> <p>제107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p>1. 부동산 임대업</p> <p>제108조(수익사업의 명칭) 제107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송의학원 사업소를 경영한다.</p> <p>제109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제108조의 사업소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2길 10 에 둔다.</p> <p>제110조(관리인) ① 제108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p>
	<p>부 칙</p> <p>이 개정 정관은 202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p>

구정준	백정준	김문리	원복영
김병욱	이민호	김정호	